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879호
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장애인 대상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애인 학대범죄에
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「장애인
복지법」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
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

않고 있습니다.

- 이처럼 재발하는 학대 상황을 방지하고자,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, 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‘21. 8.)되었습니다.

- 이에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